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9
----------	-----

2025. 4. 30.(수)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유재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재목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안 제6조)
-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등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안 제8조)

- 반려동물산업 연구·개발 및 보급 (안 제9조)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가. 발의배경

-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문화 확산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양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증가에 따라 사료, 의료, 미용, 장례, 펫테크 등 관련 산업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언론보도⁹⁾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8.5조 원으로 추산되며, 2032년에는 약 2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 상황임
- 반려동물산업의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충북의 신성장 동력산업이 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 차원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제정을 추진함

나. 제정안 주요 조문 검토

- 안 제3조 및 제4조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9) 데일리벳, 2024.06.06., “국내 반려동물 시장규모 8.5조원 추산...2032년에는 21조원”

- **안 제5조**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로 향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지원사업 추진 시 도 내 산업현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필요한 사항이라 보여짐
- **안 제6조 및 제7조**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문인력 공급을 통해 산업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반려동물산업의 중장기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안 제9조**는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반려동물산업은 반려동물 헬스케어(건강 의료기기), 펫푸드(기능성 사료), 펫테크(IoT·AI 기반 제품) 등 첨단기술 접목 산업이 성장 중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충북이 반려동물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됨
- **안 제10조**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별 수요와 특성에 맞게 관련 산업을 발굴 지원할 수 있으며,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 간 협업을 통해 기술 중심 산업으로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보여짐

다. 관련 법령 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범위로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호 차목에서는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파목에서는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에 대한 사무를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도내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통해 충북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며, 조례를 제정하는데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짐

라. 종합의견

- (필요성)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 관련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충청북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에 따라 충청북도 차원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 보여짐
 - (타당성) 도지사의 책무, 종합계획의 수립,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보급 등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 제정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유망한 반려동물산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959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유재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9
----------	-----

발의연월일 : 2025년 4월 11일

발의자 : 유재목,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안 제6조)
- 반려동물산업 관련 기업등에 대한 지원 (안 제7조)
-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안 제8조)
- 반려동물산업 연구·개발 및 보급 (안 제9조)
-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5. 4.
- 협의 : 농정국 축수산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
3. “반려동물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3. 반려동물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4. 반려동물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

5. 반려동물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

6.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 수립 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에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종합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업 및 예비창업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

2. 반려동물산업 제품개발, 신기술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3. 반려동물산업 관련 컨설팅 및 공동브랜드 개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 및 보급)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기업 등과 공동으로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과 연관된 사업 육성을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위탁) ①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소유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遺棄)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기질평가”란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 대상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11.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12.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13.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반려견 증가로 인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반려동물산업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비용 발생 요인

-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반려동물산업의 활성화와 동물보호 및 복지와 관련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관련조문

- 제6조(반려동물산업 활성화) 도지사는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2.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3.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4.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주요내용: 조례안 제6조 비용추계

나. 추계결과: 16,146,900천원 * 세부내용 별첨

다. 재원조달방안: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6개 사업	16,146,900	3,229,380	3,229,380	3,229,380	3,229,380	3,229,380

6. 작성자 : 농정국 축수산과장 최동수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출	3,229,380	3,229,380	3,229,380	3,229,380	3,229,380	16,146,900
동물보호센터 운영	405,000	405,000	405,000	405,000	405,000	2,025,000
	(국) -	(국) -	(국) -	(국) -	(국) -	(국) 0
	(도) 81,000	(도) 81,000	(도) 81,000	(도) 81,000	(도) 81,000	(도) 405,000
	(시군) 324,000	(시군) 324,000	(시군) 324,000	(시군) 324,000	(시군) 324,000	(시군) 1,620,000
	(자담) -	(자담) -	(자담) -	(자담) -	(자담) -	(자담) 0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	148,250	148,250	148,250	148,250	148,250	741,250
	(국) 44,475	(국) 44,475	(국) 44,475	(국) 44,475	(국) 44,475	(국) 222,375
	(도) 13,342	(도) 13,342	(도) 13,342	(도) 13,342	(도) 13,342	(도) 66,710
	(시군) 31,133	(시군) 31,133	(시군) 31,133	(시군) 31,133	(시군) 31,133	(시군) 155,665
	(자담) 59,300	(자담) 59,300	(자담) 59,300	(자담) 59,300	(자담) 59,300	(자담) 296,500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원	134,890	134,890	134,890	134,890	134,890	674,450
	(국) 40,467	(국) 40,467	(국) 40,467	(국) 40,467	(국) 40,467	(국) 202,335
	(도) 28,327	(도) 28,327	(도) 28,327	(도) 28,327	(도) 28,327	(도) 141,635
	(시군) 66,096	(시군) 66,096	(시군) 66,096	(시군) 66,096	(시군) 66,096	(시군) 330,480
	(자담) -	(자담) -	(자담) -	(자담) -	(자담) -	(자담) 0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251,640	251,640	251,640	251,640	251,640	1,258,200
	(국) 50,400	(국) 50,400	(국) 50,400	(국) 50,400	(국) 50,400	(국) 252,000
	(도) 52,920	(도) 52,920	(도) 52,920	(도) 52,920	(도) 52,920	(도) 264,600
	(시군) 123,480	(시군) 123,480	(시군) 123,480	(시군) 123,480	(시군) 123,480	(시군) 617,400
	(자담) 24,840	(자담) 24,840	(자담) 24,840	(자담) 24,840	(자담) 24,840	(자담) 124,200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689,600	689,600	689,600	689,600	689,600	3,448,000
	(국) 137,920	(국) 137,920	(국) 137,920	(국) 137,920	(국) 137,920	(국) 689,600
	(도) 165,504	(도) 165,504	(도) 165,504	(도) 165,504	(도) 165,504	(도) 827,520
	(시군) 386,176	(시군) 386,176	(시군) 386,176	(시군) 386,176	(시군) 386,176	(시군) 1,930,880
	(자담) -	(자담) -	(자담) -	(자담) -	(자담) -	(자담) 0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원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8,000,000
	(국) 480,000	(국) 480,000	(국) 480,000	(국) 480,000	(국) 480,000	(국) 2,400,000
	(도) 336,000	(도) 336,000	(도) 336,000	(도) 336,000	(도) 336,000	(도) 1,680,000
	(시군) 784,000	(시군) 784,000	(시군) 784,000	(시군) 784,000	(시군) 784,000	(시군) 3,920,000
	(자담)	(자담)	(자담)	(자담)	(자담)	(자담) 0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재원 조달	3,229,380	3,229,380	3,229,380	3,229,380	3,229,380	16,146,900
보조금(국비)	753,262	753,262	753,262	753,262	753,262	3,766,310
지방세(도비)	677,093	677,093	677,093	677,093	677,093	3,385,465
시·군비	1,714,885	1,714,885	1,714,885	1,714,885	1,714,885	8,574,425
기타(자담)	84,140	84,140	84,140	84,140	84,140	420,700